



안사회계법인 · 829-7575

세계재경저널 Answer

eAnSe.com ··· 2023/8/16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중소기업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상속증여 쟁점들

1. 퇴직소득범위 : 퇴직연금일시금, 현실적 퇴직원인 지급소득 등(소득세법 제22조)
2. 임원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계산방법(①+②+③,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)
 - ① 2011년 말까지 인정금액(= 201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가정한 종전의 퇴직금 : 2011년의 연평균연봉 × 10% × 근속기간 × 임원퇴직급여에 규정된 배수)
 - ② 2019년 말까지 인정금액(= 2019년 기준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액 × 10% ×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 × 3배수)
 - ③ 2020년부터 인정금액(= 실제 퇴직한 날부터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액 × 10% × 근속기간 × 2배수)
3. 총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
 근로소득분류금액(근로소득연말정산에 합산) = 퇴직관련 총지급액 - (①+②+③)
4. 퇴직금계산사례
 [2001년 창업(창업자 퇴직가산율 5배수), 2011년 연봉 5천만원, 2019년 3년 평균연봉 1억, 30년 근속 후 예상퇴직 2030년의 소급 3년간의 평균연봉 추정액 2억원인 경우]
 퇴직금인정액 = ① 전액인정 : 5천만원 × 10% × 11년 × 5배수 + ② 3배수 인정 : 1억원 × 10% × 8년 × 3배수 + ③ 2배수 인정 : 2억원 × 10% × 11년 × 2배수 = 275,000,000 + 240,000,000 + 440,000,000 = 955,000,000원
 총지급액 : 10억원이면 - 955,000,000 = 45,000,000원은 퇴직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 · 연말정산함